하자보수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별첨 호

보 증 금 액	별 첨			
계 약 금 액	일금 일백일십팔억이천오백오십만원 (₩11,825,500,000)			
계 약 명	기재공사(별첨참조)			
계 약 일	2010 년 11 월 30 일			
계약이행기일	2012 년 06 월 01 일			
하자담보책임기간	별 첨 부터 별 첨 까지			
보 증 기 간	별 첨 부터 별 첨 까지			
계 약 자	상 호	에이치에스종합건설(유)	대 표 자	김정중
특 기 사 항	1.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뒷면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내역서에 구분 기재된 내역에 따라 각 공종별로 이를 부담합니다. 2. 이 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은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

2012 년 05 월 31 일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Cooperative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이 사 장 정 완 대

대 리 인 창원지점장 김석호

경상남도 거창군 귀하

이 보증서는 대리인의 직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우리조합은 뒷면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창원지점]055-294-3261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5-12
[영남보상센터]053-745-8315 대구 수성구 범어3동 1-4번지 (건설회관 1층)
홈페이지 : http://www.cgbest.co.kr [고객상담실] 1588-1444

2011) NO. 005605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 (보증책임)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앞면 기재공사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사용검사(준공)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조합이 대신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의 지급을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5. 미시공 또는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6. 사용상 부주의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제3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 조합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제380조에 따라 제3자(이하 "하자보수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의 보증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공사등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등에 보증금 귀속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조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증서의 효력상실)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 또는 그 사본
2.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증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조합내규에서 정한 서류 등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 (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시 조정) 조합과 보증채권자간에 하자담보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주택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보 증 금 액	일금 팔천팔백육십구만일천이백오십원	(₩88,691,250)
계 약 금 액	일금 이십구억오천육백삼십칠만오천원	(₩2,956,375,000)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상림리 한성 사랑채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대지조성공사등)	
하자담보책임기간	2012 년 06 월 01 일 부터 2014 년 05 월 31 일 까지	
보 증 기 간	2012 년 06 월 01 일 부터 2014 년 05 월 31 일 까지	

보증서번호	201200107308	
보 증 금 액	일금 삼천오백사십칠만육천오백원	(₩35,476,500)
계 약 금 액	일금 일십일억팔천이백오십오만원	(₩1,182,550,000)
계약명 또는 사업명(공종명)	상림리 한성 사랑채 아파트 신축공사[공동주택부분](마감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2012 년 06 월 01 일 부터 2013 년 05 월 31 일 까지	
보 증 기 간	2012 년 06 월 01 일 부터 2013 년 05 월 31 일 까지	

보증금액합계	일금 삼억오천사백칠십육만오천원	(₩354,765,000)
계약금액합계	일금 일백일십팔억이천오백오십만원	(₩11,825,500,000)